

2026년 제2회 대전교도소논산지소 공무직근로자(시설관리인) 채용 공고

대전교도소논산지소에서 근무할 공무직근로자(시설관리인)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6월 18일
대전교도소논산지소장

1. 선발예정 분야 및 인원

임 용 예 정 기 관	채용분야	채용직종	선발예정인원
대전교도소논산지소	공무직근로자	시설관리인	1명

2. 담당예정 직무

- 교정기관 시설물 보수 등 유지관리
- 교정기관 제초, 조경 등 환경정비
- 기타 관련 규정 및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등

3. 근무 조건

- 신분 : 공무직근로자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 근로자)
- 계약기간 : 무기계약 (정년 60세)
-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40시간(월~금, 주5일근무)
 - ※ 업무상 필요한 경우 초과근무를 할 수 있으며 규정에 따라 시간외수당 지급
 - ※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등에 따름

4. 관련 법령

- 법률 제20520호(2024.10.22.) 「근로기준법」
- 법무부훈령 제1601호(2025.12.30.) 「법무부 공무원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 복지과-55호(2026.01.05.) 「2026년도 공무원직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 책정(안)」

5. 응시 자격

[적용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일]

가. 공통요건

- 「법무부 공무원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8조(「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결 격 사 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제14925호)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2329호)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영구 임용결격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24.5.31.을 기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1181(2022.11.24.), 2020헌마1605·2022헌마1276(병합) (2023.6.29.))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부입법으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 중인바, 이에 따르면 동법 개정 이후 개정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임용될 수 없고, 임용되었더라도 개정법 시행일에 퇴직하게 됩니다.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 제6호의3·제6호의4 및 제69조 제1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로 「법무부 공무원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37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단, 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지역제한 : 지역 제한은 없으나 조기출근이 가능한 자

○ 학력 및 경력 제한 :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단,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지원 가능

6. 우대 사항

[적용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시설관리 관련분야 근무경력(1년 이상, 연차별 차등 배점)

- 관련분야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만 인정
-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하며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상위 1개만 인정)

- 조경기술사, 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 조경기능사

※ 우대사항은 응시인원이 5배수 초과 이상일 때만 적용함

7. 가산 사항

[적용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서류전형에서만 적용]

구분		부가 점수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만점의 3% 가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일 때만 가점 적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가점 해당 항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1개의 가점만 적용함

※ 법정가점은 채용예정인원이 4명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적용하지 않음

8. 급여 및 후생복지

○ 기본급(월급제) : 2,155,880원

○ 정액급식비 : 매월 160,000원

○ 초과·휴일근무수당 : 별도지급

- 맞춤형복지비 : 연 1회×500,000원
- 명절휴가비 : 연 2회×1,293,530원(기본급의 60%)
- 근무복 등 피복류 제공
-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등
- 기타 근로조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법무부 공무원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등에 따름

9.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5배수 이하인 경우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소극적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5배수 초과인 때에는 서류전형 심사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적극적 서류전형)

적극적 서류전형 평정 요소별 평가기준		비고
일반 전형요소	자기소개서 평가 - 지원동기의 타당성, 내용의 충실성 및 독창성 등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사실을 바탕으로 종합적 판단	전형위형별 평가점수를 합산한 평균점수
	직무수행계획서 평가 - 직무에 대한 이해, 직무수행능력, 능력개발계획 등 직무기술서에 기재된 사실을 바탕으로 업무적합성 판단	
전문분야 전형요소	시설관리 관련분야 근무경력 가점 - 관련 분야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으로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상 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연 차 별 차등우대
	해당분야 자격증 가점 - 조경기술사, 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 조경기능사	상위 1개 인정
가산점	사회형평 가점	만점의3%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면접위원이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 5개 항목의 평정요소 : ①공무직 근로자로서의 기본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다. 최종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구분	최종합격자	예비합격자 (운영기한)	비고
인원	1명	1명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

- 2차 시험(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의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 중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처리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 서류전형 성적 순으로 결정
 - 상기 기준으로도 합격자 결정이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결정
- 최종합격자 채용을 포기하거나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 계약 체결 후 중도 퇴 발생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
 -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단,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 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포기, 선발취소, 사전 예고 없는 퇴직)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26. 6. 18.(목) ~ 6. 24.(수)	'26. 6. 22.(월) ~ 6. 24.(수)	'26. 6. 30.(화)	'26. 7. 2.(목)	'26. 7. 8.(수)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임용예정일 : 7월중 채용 예정이나, 신원조회 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채용공고는 법무부(www.moj.go.kr)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누리집에 게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일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누리집에 게시하니 응시자는 시험일정을 반드시 법무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법무부 또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서 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제출 또는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총무계에서 교부

나. 접수기간 및 시간

- '26. 6. 22.(월) ~ '26. 6. 24.(수) 09:00~18:00 (공휴일 제외)

다. 접수처 (대전교도소논산지소 총무계)

임용예정기관	소재지	전화번호
대전교도소논산지소	충남 논산시 성동면 금백로 662-19 대전교도소논산지소 총무계 (우 32928)	041-731-2222(직통) 041-733-2220(내선202)

라.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가능(인터넷 및 팩스 접수 불가)
 - 우편 접수는 전화로 문의 후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우편으로 발송)까지 인정하며, 겹봉투에 “공무직(시설관리인) 응시
원서 재중”으로 표기
-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됩니다.

12. 제출서류 안내

가.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1. 제출서류 총괄표 (별지서식 제1호)	○ 응시자별 제출하는 서류 총괄표 작성
2. 응시원서 (별지서식 제2호)	○ 응시원서 작성
3.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4.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 A4 2매 이내로 작성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 A4 2매 이내로 작성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 공통 필수
7.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7호)	○ 공통 필수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8호)	○ 공통 필수
9.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별지서식 제9호)	○ 공통 필수
10.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 (별지서식 제10호)	○ 공통 필수
11. 공정채용 확인서 1부 (별지서식 제11호)	○ 공통 필수
12. 주민등록 초본 1부	○ 공통 필수 ○ 남성은 병역관련 사항 기재 발급
13. 시설관리 관련 업무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1부	○ 우대 사항 해당자에 한함
14.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 중 1종 1부	○ 관련 경력(응시/우대요건) 해당자에 한함 (주민번호 뒷자리 미표시)
15. 소득금액 증명서(전 근무기간)	○ 관련 경력(응시/우대요건) 해당자에 한함
16.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	○ 관련 경력(응시/우대요건) 해당자에 한함
17. 가점사항 증빙서류 1부	○ 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 사용금지)

나. 유의사항

- 최종합격자 발표 다음날부터 30일간 응시자(채용 확정자 제외)가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별지서식 12>를 참고하여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제출된 증빙서류는 발행기관에 진위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허위사실 기재 또는 위·변조 시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구분	유의사항
모든 증명서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함 ▶ 제출된 경력 사항에 대하여만 인정함
경력증명서	▶ 경력증명서는 근무한 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근무부서·근무기간·담당업무가 기재 되어 있어야 함 ※ 발급기관의 발급담당자 ·전화번호 ·Fax번호 ·E-mail 주소를 기재
외국어 작성 증명서	▶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는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

13. 유의사항

- 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게 됩니다.
- 자격 및 경력 등은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자료만 인정되며, 자격증·면허증은 국내 자격증에 한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는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사유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채용계약 체결)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포기, 선발취소, 사전예고 없는 퇴직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3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누구든지 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채용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릅니다.

-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마친 후 임용 예정입니다.
- 자격요건, 채용절차 및 담당직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교도소논산지소 총무계(☎ 041-731-22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제1호>

서류전형 증빙자료 제출서류 총괄표

성 명	생년월일	응시기관	응시분야
		대전교도소논산지소	공무직근로자 (시설관리인)

■ 작성목록(총괄표)

목 록	제출여부
① 제출서류 총괄표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② 응시원서(필수)	☐ 제출 ☐ 미제출
③ 이력서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④ 자기소개서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⑦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⑧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⑨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⑩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⑪ 공정채용 확인서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⑫ 주민등록 초본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⑬ 시설관리 관련 업무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1부	☐ 제출 ☐ 미제출
⑭ 4대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 중 1종 1부(관련 경력 해당자)	☐ 제출 ☐ 미제출
⑮ 소득금액 증명서(전 근무기간) 1부 (관련 경력 해당자)	☐ 제출 ☐ 미제출
⑯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 제출 ☐ 미제출
⑰ 가점사함 증빙서류 1부(해당자)	☐ 제출 ☐ 미제출

※ □에는 서류제출여부를 √하여 제출하시고, 증빙서류(사본)에 학교명, 출생지, 부모
직업 등 개인 신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조치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 후 클립 혹은 집게사용 고정 제출(스테플러 사용 절대 금지)

2026. . .

성명 : (서명)

대전교도소논산지소장 귀하

<별지서식 제2호>

응시원서

본인은 대전교도소논산지소에서 실시하는 공무직(시설관리인)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전교도소논산지소장 귀하

※응시번호	채용담당자 기재란	성명	(한글)	
응시분야	공무직근로자 (시설관리인)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 예 ☐ 아니오	
주 소	(우)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시표

2026년도 제2회 공무직(시설관리인) 공개경쟁 채용시험

※응시번호	채용담당자 기재란	응시분야	공무직근로자(시설관리인)
성명	(한글)	(한자)	
년 월 일 대전교도소논산지소장 ㉞			

주의사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일 전일까지 대전교도소논산지소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도착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 · 생년월일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별지서식 제3호>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채용담당자 기재란	응시 기관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응시 분야	공무직근로자 시설관리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나. 우 대 사 항				
자 격 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일	자격 검정기관	
경 력	근무기관(부서명)	근무기간(근무 연·월수)	직위(직급)	담당업무

다. 가 산 사 항				
가 산 요 건	구분	세부내용	발행기관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자 기 소 개 서

☐ 응시기관 : 대전교도소논산지소	☐ 응시분야 : 공무원(시설관리인)
☐ 성 명 : ○○○	☐ 생년월일 : 0000.00.00.

【작성요령】

① 자기소개서 양식 변경 불가

② A4용지 2매이내의 분량으로 작성(글자체는 휴먼명조, 글씨크기 14포인트, 줄간격 160%)

③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 전망, 성품, 직장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④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⑤ 이 [작성요령] 삭제하고 내용만 기재

· · ·

작 성 자 :

(서명)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성명		응시기관	대전교도소논산지소
생년월일	. . .	응시분야	공무직(시설관리인)

본인은 대전교도소논산지소에서 시행하는 공무직(시설관리인) 채용 시험 응시자로서 대전교도소논산지소가 실시하는 자격, 경력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대전교도소논산지소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시설관리인) 채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u>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경력·학위 등</u>	공무직 채용 관리	<u>5년</u>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진행 할 수 없어 공직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u>주민등록번호</u>	공무직 채용 관리	<u>5년</u>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진행 할 수 없어 공직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u>범죄경력자료</u>	공무직 채용 관리	<u>5년</u>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진행 할 수 없어 공직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u>법무부 국적과</u>	공무직 채용 관리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u>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u>
<u>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u>	공무직 채용 관리	자격, 경력, 단증, 취업지원대상자 등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u>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u>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시험 부정행위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 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u>법무부 교정본부</u>	<u>시험 응시자격 정지여부 회신</u>	성명, 주민등록번호	<u>5년</u>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대전교도소논산지소장 귀하

<별지서식 제8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대전교도소논산지소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공무원 근로자 채용 결격사유 확인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 번	행정정보명		
1	범죄경력 유무 조회		
2	결격사유 유무 조회		
3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 유무 조회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_____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
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대전교도소논산지소 공무직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이드라인 제23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026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대전교도소논산지소장 귀하

<별지서식 제10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u>공직자</u>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해당 ☐ 비해당 ☐
2. ‘<u>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u>’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 비해당 ☐
3-1. 해당 부패행위로 <u>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u>된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u>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u>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해당 ☐ 비해당 ☐
4-1. 해당 부패행위로 <u>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u>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u>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u>(5년 내)	해당 ☐ 비해당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해당 ☐ 비해당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 년 월 일

생년월일

지 원 자

(서명)

년 월 일

공정채용 확인서

(응시자용)

작성자 인적사항

생년월일 :

성명 :

※ 다음 표의 확인사항에 대해 해당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확 인 사 항	해당여부	
	예	아니오
본인과 본인의 가족은 법무부의 채용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	☐
본인의 친인척이 법무부에 재직 중에 있습니까?	☐	☐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생각합니까?	☐	☐
친인척 관계있는 직원은 몇 촌 이내이며, 근무부서 및 이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촌 이내 / 소속기관 : 근무부서 : 이름 :		

본인은 위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든 적극적 채용 개입이나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채용이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명 (인)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고지

- ① 수집·이용목적 : 채용경로 조사 및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 이행을 위한 채용비리 여부 조사, 감사자료 작성
- ② 수집·이용항목 : 성명, 소속, 직종, 소속기관 입사일자, 법무부 직원과의 관계 및 해당 직원 소속성명
- ③ 보유기간 : 재직기간 동안 보유

대전교도소논산지소장 귀하

<별지서식 제12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채용 서류 반환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전교도소논산지소장 귀하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